

(1991. 1. 10. 개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法人은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高分子에 關한 化學, 物理學, 生物學, 工學등에 관한 學問 및 技術의 發展 및 普及에 寄與하고 高分子科學 및 高分子工業의 振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韓國高分子學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 3 條 (事務所의 所在地)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 4 條 (事業) 本會는 第 1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會誌 및 기타 圖書의 刊行
2. 研究發表會, 講演會, 講習會 및 展示會 등의 開催
3. 調查研究, 資料蒐集
4. 研究의 獎勵와 優秀한 業績의 表彰
5. 公益事業의 協贊, 建議 및 高分子工業에 관한 諮問
6. 其他 이 法人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5 條 (法人 供與利益의 受惠者) 本會의 目的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그 受惠者에게 提供하는 利益은 이를 無償으로 한다. 다만, 不得已한 경우에는 事前에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그 代價의 一部를 受惠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第 6 條 (委員會와 支部 및 分會) 本會는 第 4 條의 運營을 效率의으로 하기 위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會와 支部 및 分會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第 7 條 (會員資格)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며 本會의 所定の 入會願書를 提出하고 正會員의 推薦을 받아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8 條 (會員의 種類) 本會는 다음과 같은 會員을 둔다.

1. 正會員

高分子 및 이에 關聯된 科學, 技術 및 工業에 關한 學問을 배웠거나 이에 從事하는 者. 다만 正會員中 終身會費를 納付한 者는 終身會員으로 한다.

2. 學生會員

大學에서 正會員에 準한 學問을 배우고 있는 者

3. 團體會員

本會의 目的에 贊成하여 이에 協助하는 學校, 研究所, 圖書館 및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學術團體 또는 機關

4. 特別會員

本會의 目的에 贊成하여 그 事業遂行을 支援하는 個人, 團體 또는 事業體로 한다.

5. 名譽會員

本會의 目的에 關하여 貢績이 顕著하거나 本會發展에 貢績이 있는 者

第 9 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本會의 會員은 理事會가 定하는 會費를 當該年3月31日까지 納入하고 이 定款에 의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第 10 條 (會員의 脫退) 本會의 會員은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 11 條 (會員除名) 本會의 會員中 다음 名號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除名할 수 있다.

1. 本會의 目的에 違背되는 行爲를 한 경우
2. 本會의 名譽를 損傷한 경우
3. 本會에 대한 義務를 怠慢히 한 경우

第 3 章 任 員

第 12 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本會의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 長	1人
首席副會長	1人
副 會 長	3人
專 務 理 事	1人
總 務 理 事	1人
理 事	10人 以上 20人 以內(會長, 副會長, 專務理事, 總務理事를 包含한다)
監 查	2人

第 13 條 (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會長職과 首席副會長職은 각각 連任할 수 없다.

② 任員의 任期中 缺員이 생긴 때에는 補選할 수 있고 補選에 의하여 就任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4 條 (任員의 選任方法) ① 會長職은 前任期의 首席副會長이 昇階한다. 專務理事職은 前任期의 總務理事가 昇階한다.

② 會長, 專務理事를 제외한 任員은 評議員會의 提請으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認准과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 就任한다.

③ 任期前의 任員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認准과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15 條 (會長 및 理事의 職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本會의 義務를 總括하며 理事會 및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本會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議決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 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第 16 條 (會長 職務代行者의 指名) 會長의 有故時에는 首席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17 條 (監査의 職務) 監査는 다음의 職務를 行한다.

1.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 第1號 및 第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法한 點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이를 理事會, 總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그래도 是正치 않을 때에는 監督廳에 報告하는 일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總會 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本會의 財産狀況 또는 總會, 理事會의 運營과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會長 또는 總會, 理事會에서 意見을 陳述하는 일
6. 總會 및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捺印하는 일

第 4 章 總 會

第 18 條 (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 變更에 관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의 承認
3. 任員 認准에 관한 事項
4. 事業計劃의 承認
5. 其他 重要 事項

第 19 條 (總會의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되 定期總會는 年2回 4月과 10月中에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하고 會長은 그 議長이 된다.

② 會長은 會議案件을 明記하여 7日前에 各 會員들에게 書面으로 通知하거나, 本會誌 또는 新聞에 公告하여 이를 召集한다.

③ 總會는 第2項의 通知事項에 한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第 20 條 (總會의 議決 定足數) ① 總會는 正會員의 15分の 1以上の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總會의 議事は 出席 正會員의 過半數로서 議決하고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 21 條 (總會召集의 特例) ① 會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内に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가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17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3. 正會員 3分の 1 以上이 會議의 目的을 제시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② 總會召集權者가 關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서 總會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任籍理事 過半數 또는 正會員 3分の 1 以上の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總會는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議長을 指名한다.

第 22 條 (總會議決 除斥事由) 議長 또는 會員이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
2. 金錢 및 資産의 授受를 수반하는 事項으로서 會員自身과 本會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

第 23 條 (評議員會 構成) 總會에 附議할 事項을 事前檢討하게 하기 위하여 在籍正會員 10分の 1 未滿의 評議員을 總會에서 選任하여 評議員會를 構成한다. 다만 經微한 事項에 對하여는 評議員會의 事前檢討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章 理 事 會

第24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2. 事業計劃, 運營에 관한 事項
3. 豫算, 決算書作成에 관한 事項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5. 이 定款에서 定한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6. 其他 重要事項

第25條 (議決定足數) ① 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過半數가 出席하지 아니하면 開會하지 못한다.

- ② 理事會의 議事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 ③ 理事會의 議事는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 ④ 監査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26條 (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必要時 會長이 召集한다.

-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目的을 明示하여 各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③ 理事會는 第2項의 通知事項에 한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在籍理事 全員이 出席하고 出席理事全員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通知하지 아니한 事項이라도 이를 附議하고 議決할 수 있다.

第27條 (理事會 召集의 特例) ① 會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以内に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17條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 ②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召集할 수 있다.
- ③ 第2項에 의한 理事會는 出席理事中 年長者의 司會아래 그 議長을 指名한다.

第28條 (書面決議의 禁止) 理事會의 議事는 書面決議에 依할 수 없다.

第6章 財産 및 會計

第29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會員의 會費
2. 財産에서 생기는 果實
3. 寄附金品
4. 其他 收入

第30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31條 (豫算 및 決算) ① 會長은 豫算案을 作成하여 每會計年度 開始 1月前까지 事業計劃書와 함께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 監督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 ② 會長은 每會計年度 終了後2月以内に 年間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監査의 審査를 거쳐 理事會의 議

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 監督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32 條 (豫算外의 債務負擔 등) 豫算外의 債務의 負擔이나 債權의 拋棄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7 章 補 則

第 33 條 (解散) 本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4 條 (解散法人의 財産歸屬) 本會가 解散할 때의 殘餘財産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에 寄贈한다.

第 35 條 (定款改定) 本會의 定款을 改定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分の 2以上の 贊成과 總會의 議決을 거쳐 監督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36 條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細部的인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37 條 (公告事項 및 方法) 法令의 規定에 依한 事項과 다음 各號의 事項은 이를 日刊紙에 公告하여 行한다.

1. 本會의 名稱 및 事務所의 所在地 變更

2. 本會의 運營에 關한 事項

第 38 條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本會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현 주 소	임 기
회 장	성 좌 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69	1978년 12월까지
부 회 장	이 형 규	경남 마산시 양덕동 222	1978년 12월까지
부 회 장	심 정 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0-45	1978년 12월까지
전부이사	노 의 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03	〃
이사(편집담당)	조 의 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
이사(총무담당)	김 계 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37-140	〃
이사(재무담당)	홍 성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9-99	〃
이사(기획담당)	최 남 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	〃
이사(조직담당)	장 성 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82-31	〃
평 이 사	최 규 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0-7	〃
감 사	김 원 택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동 307	〃
감 사	정 기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239	〃

附 則

이 定款은 監督廳의 許可를 받은날로 부터 시행한다.

한국고분자학회 규정

자문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사업에 대한 자문.
2. 학회 임원 선출에 대한 자문.
3. 기금 모금에 관한 자문.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자문.
5. 기타 학회 이사회에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한 자문.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전임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전임 회장과 이에 준하는 경륜을 갖춘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해당된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기금관리위원회 규정

(1986. 4. 24 제정)

(1989. 4. 18 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기금의 효율적 관리.
2. 기타 학회 자산 확장에 관한 사업.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부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하며 재무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에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재무위원회 규정

(1979. 1. 26 제정)

(1991. 1. 10 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재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운영 자금의 조달
2. 학회 기금 조성
3. 기타 학회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의 확보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부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하며 재무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977. 1. 10 제정)

(1981. 1. 29, 1991. 1. 10 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을 둔다.

제 2 조 편집위원회에는 학술편집위원회와 기술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학술편집위원회는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1. 폴리머지 간행
2. 기타 학술관련도서의 발간

제 4 조 기술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과학과기술지 간행
2. 기타 기술관련도서의 발간

제 5 조 학술 및 기술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각 1명
2. 부위원장 각 1명
3. 위원 각 10명 내외

제 6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학술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학술편집간사로, 그리고 기술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편집간사로 보한다.

제 8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1979. 1. 26 제정)

(1991. 1. 10 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산학협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을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연구소 및 산업계 간의 협력 증진.
2. 고분자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강자의 개최.
3. 관련기관의 견학 및 시찰.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기획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위원회 규정

(1987. 3. 12 제정)

(1991. 1. 10 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을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대학 (전문대학 포함) 및 대학원의 고분자 분야 교과과정과 시설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2. 대학 및 대학원의 고분자 관련학과의 설치기준 및 교육 내용의 평가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3. 기사 1,2급 및 기술사 등의 자격시험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4. 기타 고분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용어제정위원회 규정

(1979. 1. 26 제정)

(1991. 1. 10 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용어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과학 및 관련 분야의 용어의 제정.
2. 고분자 화합물의 명명법 제정.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평의원회 규정

(1977. 9. 23 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23조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제 2 조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후보자의 제청
2. 학회상 시상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승인
4. 기타 주요 사항

제 3 조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선임된다.

제 4 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5 조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 6 조 평의원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학회 포상 규정

(1987. 10. 13 제정)

(1989. 4. 18, 1991. 1. 10 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고분자 학술상 및 고분자 기술상의 시상을 실시한다.

제 2 조 고분자 학술상은 수상 대상 기간에 고분자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술적인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 3 조 고분자 기술상은 수상 대상 기간에 고분자 관련 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 4 조 시상은 매년 춘계총회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적절한 수상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5 조 시상의 대상이 되는 업적은 시상년도의 전해부터 기산하여 2년간 이룩한 업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 학술상 및 기술상 후보자는 시상 실시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제 7 조 회장은 포상심사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제 8 조 본 규정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시상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조 포상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심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심사에 임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의 실시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지부 및 분회 규정

(1977. 5. 6 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둔다.

제 2 조 지부 및 분회는 학회 정관 제 4조의 사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 3 조 지부는 지방별로 30명 이상, 분회는 직장별로 5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지부장은 지부 규약에 따라 각 지부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분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되 지부 산하의 분회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지부장은 본 규정 제 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부 규약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부장 및 분회장은 지부 및 분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지부 및 분회를 각각 대표한다.

제 8 조 지부장 및 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9 조 지부 산하 회원의 회비는 그 3분의 1을 지부 활동비로 하고 본사가 해당 지부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납부된 특별회비는 그 2분의 1을 지부 활동비로 할 수 있다.

제10조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의 명단과 지부의 주요 업무 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간사위원회 규정

(1989. 1. 18, 1991. 1. 10 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간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2. 기타 학회 일상 업무의 수행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간사장(위원장) 1명
2. 부간사장(부위원장) 1명
3. 재무간사 1명
4. 편집간사 2명
5. 기획간사 3명
6. 조직간사 2명

제 4 조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한다.

제 5 조 부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문위원회 규정

(1991. 3. 14 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진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제 3 조 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와 사업계획을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회는 학회의 전문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워크샾,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2. 전문성을 가지는 뉴스레터의 발간
3. 춘계 및 추계연구논문발표회의 특별강연, 연사추천, 발표장의 좌장추천 및 발표장 운영에 관한 협조
4. 기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 5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간사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간사 및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9 조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원은 본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1조 1.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고분자과학과기술”지에 게재한다.

제12조 1. 부문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후 및 연도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4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규정

(1977. 1. 10 제정)

(1986. 2. 26, 1987. 3. 12 개정)

1.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간행되는 회지에 투고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은 본 회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잡지에 논문으로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의 투고는 회원에 한한다. 공동연구자 또는 초청투고자는 예외로 한다.
4. 논문의 접수일은 논문이 본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5. 논문 작성은 국어(한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영어, 독어 및 불어도 사용할 수 있다.
6. 논문의 원고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7. 논문의 서식은 가로쓰기로 하고 약 $21 \times 28\text{cm}^2$ 크기의 용지에 한줄 건너 한면에만 타자하며, 논문의 분량은 표와 그림 등을 포함하여 15면 이내이어야 한다. 단, 원고지를 사용하는 경우 200자 원고지 50매 이내이어야 한다.
8.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별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및 주소(논문작성에 사용한 언어에 관계없이 국어와 외국어로 써야 하며, 저자의 현 소속기관이 연구당시와 다른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 및 주소를 각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 (2) 국문초록(400자 이내) 및 영문초록(150자 이내)
 - (3) 본문
 - (4) 인용문헌
 - (5) 표
 - (6) 그림
9. 국어 논문의 경우 학술어는 원칙적으로 한국고분자학회가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분자 용어집 참고).
외국어 논문의 경우 화학술어는 Chemical Abstracts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10. 모든 표와 그림의 설명에는 영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표는 약 $21 \times 28\text{cm}^2$ 크기의 백지에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표 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

치하고 표에 사용한 약어에는 정의를 주어야 한다. 모든 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예 : Table 1).

11. 그림 원본은 쉼트지 또는 트레이싱지(약 $21 \times 28 \text{cm}^2$)에 깨끗이 흑색으로 그려야 하며, 그림의 설명은 별지에 모아서 적어야 한다. 그림의 선의 굵기와 그림에 삽입된 글자의 크기는 약 1/2로 축소된 후에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예 : Fig. 3), 그 번호를 그림의 뒷면에 연필로 적어두어야 한다.

12.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나 시료기호 등은 그것이 처음 사용된 곳에서 한번만 정의해 주어야 한다.

(예 : Polyethylene(PE) 또는 solution of polystyrene in diethyl oxalate(PS/DEO))

13.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동일한 실험결과를 그림과 도표로 중복되게 표현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15. 인용된 문헌을 본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문구의 우측 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로 그 인용문헌의 번호를 표시한다(예 : 이미 보고된 결과와⁵ 일치하는……).

16. 인용된 참고문헌들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17. 인용문헌이 학술잡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형식에 맞추어 기입하되, 잡지명 밑에 ~의 줄을 긋고, 권을 표시하는 숫자 밑에는 밑줄을 그어야 한다.

저자명, 학술잡지명, 권, 쪽(발행년도).

인용한 잡지명을 약기하는 방식은 Chemical Abstracts의 List of Periodicals에서 채택한 것을 써야 한다.

(예 : P. J. Flory, Macromolecules, 7, 381(1974).)

18. 인용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다음의 형식에 맞추어 기입하여야 한다.

저자명, “책이름”, 판수, 편집자명, 권, 쪽,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년도.

단, 판수 및 편집자명, 권등에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들을 생략한다.

(예 : E. Jenckel, “Die Physik der Hochpolymeren”, ed. by H. A. Stuart, vol. III, p. 621, Springer-Verlag, Berlin, 1957.)

19. 연구가 간단하나 중요한 결과는 이를 속보(Communications 또는 Letters) 또는 단신(Notes)으로 투고할 수 있다.

20. 투고시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규정

(1977. 1. 10 제정)

(1981. 1. 29, 1987. 3. 12, 1991. 1. 10 개정)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단신(Notes), 속보(Communications과 Letters)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2. 논문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학술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3. 심사결과는 “채택가”(무수정, 수정후채택), “수정후 재심”과 “채택불가”로 판정한다.

(1) “채택가”중 “무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없이 채택한다.

- (2) “채택가”중 “수정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충한 후 재심없이 채택한다.
- (3) “수정후 재심”으로 판단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충한 후 원심사위원에게 재심을 받는다.
4.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5.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필요”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수정,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2)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7. 논문이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학술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9.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가” 다른 1명이 “채택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학술편집위원장은 제1, 2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제3심사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심사위원이 “채택가”나 “채택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10.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판정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11.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